

# FTAtoon

통합 매뉴얼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 발간사



전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계 2대 경제권인 미국, EU를 포함한 46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발효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국, 일본과의 FTA 및 RCEP 등이 발효될 경우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은 80%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와같이 FTA로 확대된 경제영토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세계시장을 선점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복잡·다양한 원산지제도 등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기 여전히 어렵고, 협정과 다르게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로 인해 상대국 세관에서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등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에 거부감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원산지관리 전반에 관한 매뉴얼을 ‘카툰형식’으로 제작·배포하였고, 이번에 그간 개별 연재식으로 제작되었던 내용을 통합하여 한 권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간하는 ‘FTA-toon 통합 매뉴얼’이 우리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는데 유용한 안내서가 되어 기업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 Contents





<b>제 1 편</b>	
좌충우돌, 막둥이의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성공기	_07
<b>제 2 편</b>	
FTA-PASS 요정이 안내하는 원산지 관리 따라하기	_25
<b>제 3 편</b>	
원산지 인증수출자 완전정복기 !!	_51
<b>제 4 편</b>	
원산지검증 대응으로 스타가 된 원대리	_71
<b>제 5 편</b>	
원산지검증 대응으로 스타가 된 박과장	_93
<b>제 6 편</b>	
FTA의 여왕	_119



# FTAtoon

통합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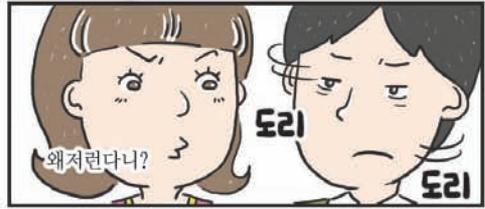


## 좌충우돌, 막둥이의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성공기

# 01











**필승FTA!**



우리 회사가 수출하는 국가가 프랑스랑 태국이니까... 모두 FTA 체결국이니!









**기관발급**

- 정 의** ▶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 국가의 관세당국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
- 대상협정** ▶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한-페루
- 특이사항** ▶ 한-EFTA : 스위스산 치즈는 기관발급  
한-페루 : 발효 이후 5년간(2016.7.31까지) 기관발급 허용



**자율발급**

- 정 의** ▶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서명하여 사용하는 제도
- 대상협정** ▶ 한-칠레, 한-EFTA, 한-EU, 한-페루
- 특이사항** ▶ 한-EU : 건당 수출금액이 6,000유로 초과시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 자율발급 가능  
한-페루 : 탁송화물의 총 가격이 미화 2천불 초과인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만 자율발급 가능





**원산지신고서 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한-EU FTA C/O는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고,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하면 되요





원산지증명서 구비서류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

▶ 선적이 완료되기 전 신청시 구비서류

1. 수출신고수리필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원산지확인서
4. 원산지소명서
5. 원산지소명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BOM, 원료구입명세서, 생산공정명세서, 원료 수물부, 원가산출내역서 등)

▶ 선적이 완료된 이후 신청시 구비서류

1. 선적 완료전 신청시 구비서류 일체
2. 사유서(수출물품 선적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제외)
3. 선하증권 사본
4. 사유서 내용 입증자료(발급기관 요구시)



처음 신청하실 때는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매뉴얼만 잘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원재료(부품) 또는 완성품 공급자가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거나 국내 제조 사실을 작성한 서류를 말합니다

\*포괄증명이란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는 않는 범위에서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계속·반복적으로 작성 가능합니다

원산지소명서

수출업자가 원산지확인서 등을 토대로 최종 수출물품의 원산지판정내역을 소명한 자료를 말합니다

\*C/O 기관발급 신청시, 자율발급 C/O 근거자료 활용시, 인증수출자 신청시, 원산지 서면조사 요구시 필요합니다

원산지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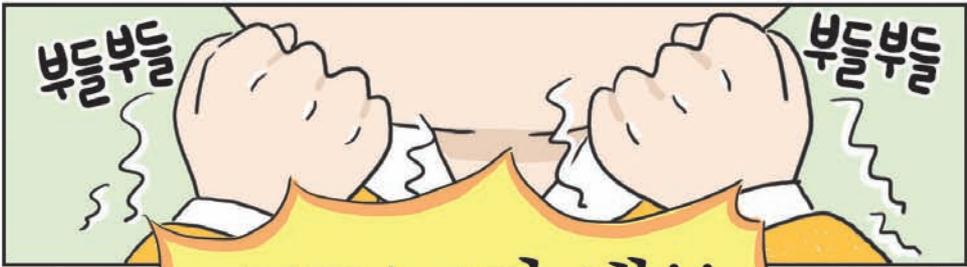
원산지확인서 · 원산지소명서를 근거로 한국산임이 확인된 수출물품에 대해 기관 또는 수출자 자율적으로 발급된 증명서입니다













# FTAtoon

통합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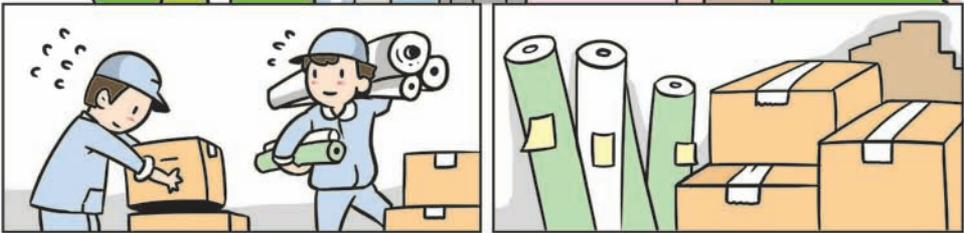


FTA-PASS 요정이 안내하는  
원산지 관리 따라하기

02

2012년 1월

포장지를 미국·인도에 수출하는 00알루미늄사는  
인도로 수출시 이미 FTA를 활용중이며, 2012.1월초  
한-미 FTA발효를 앞둔 중요시점에 FTA담당자인  
성대리가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다.



우리회사는 품질관리인증  
우수 중소기업!!!

ISO 9001  
인증서

KSA 9001  
인증서

나활용씨~



성대리가 출산휴가로 나할용 사원에게 업무 · 인수 인계 중









나홀용 사원은 FTA업무로 매일 늦게까지 야근하지만 일은 계속 쌓여가고...

2012년 2월



우리회사 제품 및 원재료가 수백개데 혼자 수작업 하기도 힘들고..자신도 없고..

미국은 사후검증이 엄격하다던데..



해결방안이 없을까? 그래! 인터넷에 물어보자!





원산지관리시스템!



그리고 무료!!!  
해결방법이 보이는군.

관세청 FTA포털 사이트 <http://fta.customs.go.kr>

- 목적** 수출입기업이 FTA 활용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FTA전문정보 제공
- 메뉴구성** 기업에 '실제 필요한 정보'를 '각 수출입 단계별 구분' 제공
  - 상대국 · 우리나라 기본세율, 협정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제공
  - 원산지확인 · 증명 · 검증, 수출자 인증, 비즈니스모델 등 제공
  - FTA효과가 큰 한-미, 한-EU FTA는 독립 메뉴 구성
  - FTA사이버 강의, 국내외 애로신고, FTA-PASS 등 제공



오! 이런 프로그램도 있네?  
근데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하지?  
뭔가 쉬워는 보이는데...



안녕~친구~!  
왜 그렇게 울상이예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내가 도와줄게요~



자자잔~





## FTA-PASS 종류

Web 용  
(사용편리)

1. 일반형  
(기본 모든기능)

2. 간편판정형  
(초보, 영세업체용)

3. 자재수불형  
(ERP\* 사용기업)

PC 용  
(판정data  
개별PC저장)

4. 일반형  
(상동)

5. 섬유·의류형  
(해당산업특화)

\* ERP: 전사적자원관리









**Q.** 잠깐! 여기서 퀴즈!  
(주)○○알루미늄은 어느 FTA-PASS를 사용하는게 좋을까요?





다음에는  
 물품·재료, 자재명세서, HS Code를  
 다운받고 거래정보에서 원가관리,  
 원산지근거서류, 완제품 가격관리를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 엑셀시트 해당양식

1	2	3	4	5	6	7
거래처	물품·재료	자재명세서 (*BOM)	HS코드관리	원가관리	원산지 근거서류	완제품 가격관리

\*BOM(Bill of Material) : 자재명세서

### 1. 거래처

거래처 정보 (1/7)									
*거래처코드	*거래처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국가
CA-00-000	0	211-00-00001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KIM DOCKI	031-600-0701	031-600-0704	dkkim@origin.or.kr	206-8 Yatap Rd, Bundano-gu	KR

### 2. 물품·재료

물품·재료 정보 (2/7)						
*물품번호	*물품명	규격	단위	*가공단계**	*원재료속성***	원재료상품여부
CA-A01-000	형광등기구	32W	EA	PT03		
CA-A01-001	저항기		EA	PT01	PA01	N
CA-A01-002	축전지		EA	PT01	PA01	N

### 3. 자재명세서(BOM)

자재명세서 정보 (3/7)						
*완제품 물품번호	*완제품 생산일자	*물품번호 (중간재, 원재료)	소요량	원재료 매입처코드	원재료매입일 (YYYY-MM-DD)	*상위물품번호**
CA-A01-000	2012-12-01	CA-A01-001	2	CA-00-001	2012-09-01	CA-A01-000
CA-A01-000	2012-12-01	CA-A01-002	1	CA-00-002	2012-09-01	CA-A01-000



작성방법은 양식의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표시는 필수입력 항목인거  
아시죠?

옴!



4. HS코드관리

HS코드 정보 (4/7)			
*물품번호	*적용협정코드*	*국가코드**	*세번(HS6단위)
CA-A01-000	ALL	ALL	940520
CA-A01-001	ALL	ALL	853329
CA-A01-002	ALL	ALL	853290

5. 원가관리

원가관리 정보 (5/7)				
*원재료 물품번호	*매입기준일 (YYYY-MM-DD)	*매입처코드	*원가 (매입단가)	*가산조정액*
CA-A01-001	2012-01-01	CA-00-001	2200	0
CA-A01-002	2012-01-01	CA-00-002	2750	0
CA-A01-003	2012-01-01	CA-	3300	0



6. 원산지 근거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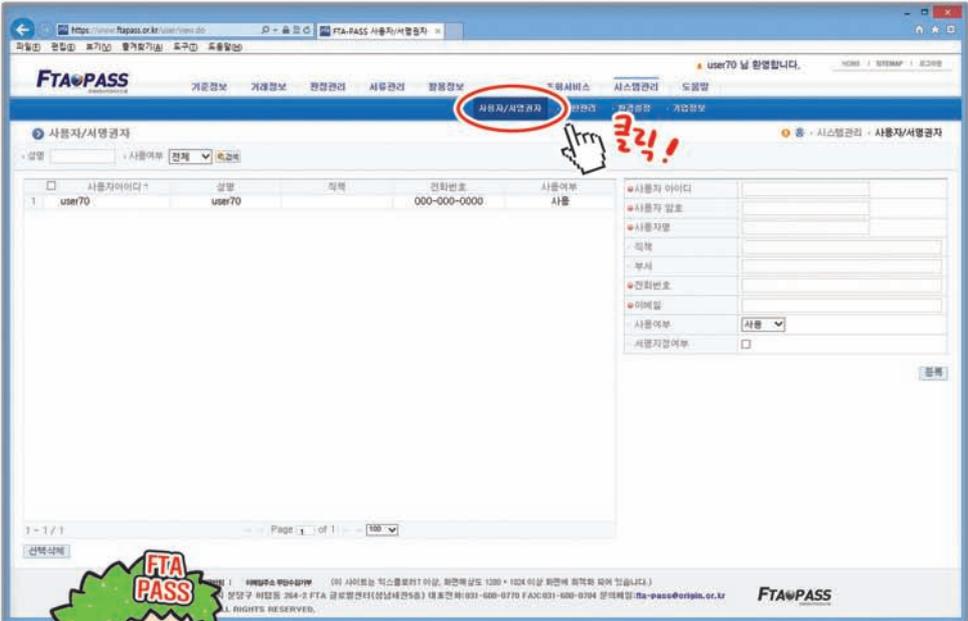
원산지 근거서류 정보 (6/7)									
원산지근거 마스터 정보			공급물품명세서(상세) 정보						
서류발급 번호	서류 구분*	매입처 코드	원재료 물품번호	HS 코드	협정**	결정기준	원산지	적용 시작일	적용 종료일
2012-CA-B벤더	D06	CA-00-002	CA-A01-002	853290	KORIN	CTSH + BD35	KR	2012-01-01	2012-12-31
" "	" "	" "	" "	" "	KORAS	CTH	" "	" "	" "
					KOREU	CTH			
					KORUS	CTH			
					KOREF	CTH			
					KORCL	CTH			

7. 완제품 가격관리

완제품 가격정보 (7/7)				
*물품번호 (완제품, 중간재)	*매출일 (YYYY-MM-DD)	*매출처코드	EXW 가격	FOB 가격
CA-A01-000	2012-12-10	CA-00-003	140500	146550

양식을 다 작성한 후  
다음 절차는요?

먼저 시스템관리에서  
사용자·서명권자 메뉴를  
클릭하여 등록합니다.



다음,  
시스템관리 → 기업정보 메뉴를  
클릭하여 회원가입시 등록정보를  
조회/수정합니다.

자~! 이제 준비된  
판정데이터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 ▶ 판정데이터 입력

- 1 [기준정보 > 거래처] 메뉴를 클릭      2 [일괄등록] 버튼 클릭

기준정보에서는 이미 작성한 거래처, 물품·재료, 자재명세서 및 HS코드관리 메뉴를 클릭하여 관련 데이터를 일괄등록합니다.

거래정보에서는 원가관리, 원산지근거서류 및 완제품 가격관리 메뉴를 클릭하여 일괄 등록합니다.

- 3 파일찾기 > 4 거래처 엑셀양식 불러오기(선택) > 5 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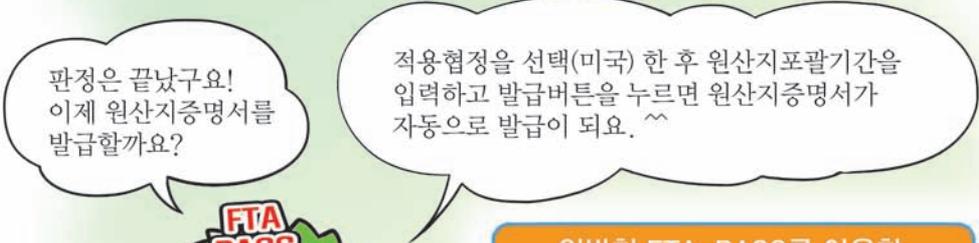
이제 판정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번호	거래처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국가코드
1	CA-00-000	0	Institute of Information	김도훈	0701	0704	dkim@origi...	205-4 Yelap Rd,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KFR
2	CA-00-001	2	CA-A번더	홍길동	000-000-0000	000-000-0000	gdhong@cae...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락동	KFR
3	CA-00-002	2	CA-B번더	김철수	000-000-0000	000-000-0000	ckkim@cab.c...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락동	KFR
4	CA-00-003	2	CA-C번더	이영희	000-000-0000	000-000-0000	yihlee@cac...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락동	KFR
5	CA-00-004	3	CA-D번더	이승기	000-000-0000	000-000-0000	isg@cab.c...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락동	KFR
6	CA-01-001	1	DE-120001	DE-BELL	BELL	82-55-0000-0000	82-55-0000-0001	gen@bell.co...	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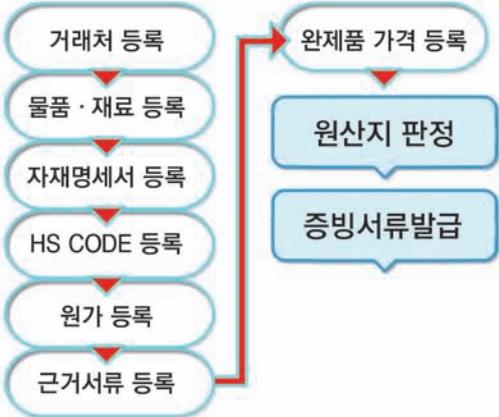


✦
 현재 FTA-PASS 와 ERP간 데이터 연계를 위한 API를 공개하고 있으며, '13년도 하반기에는 FTA-PASS'와 범용 ERP 연계모듈을 개발·보급 예정
 ✦





**일반형 FTA-PASS를 이용한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절차**



간단하죠?  
호호호

우와~ 이렇게 쉽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할 수 있구나!

더구나 원산지  
증빙서류가 자동생성  
되어 검증대비까지!

잠깐! 영세업체가 사용하기에는  
거래처와 공급물품만 등록하는  
간편판정형이 안성맞춤 이에요.

이것은 우리회사에  
납품하는 영세업체인  
박&안사 백대리에게  
알려줘야지.

그리고! 몇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FTA-PASS 사후관리팀  
(☎031-600-0770) 이  
있어요.

사후관리팀?  
무슨일을  
하나요?!

주로 이메일 (fta-pass@origin.or.kr)  
인터넷 (<http://www.ftapass.or.kr>) 및  
전화 (031-600-0770) 를 통해  
FTA-PASS 사용방법 등을 상담합니다.

인터넷  
internet

이메일  
E-mail

전화  
telephone



이외에도 관세청에서는  
최대 400만원까지  
FTA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관할 세관에 문의해 보세요.



2012년

2월

3월

3월  
10일

그 뒤에 나활용 사원은 FTA-PASS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다운받고, 교육 동영상을 보면서 FTA-PASS 기능을 익혔고..



평택세관에 FTA-PASS활용 예산지원 컨설팅 사업 참가신청 및 컨설턴트 (관세사)가 나와서 원재료에 대한 HS 분류, BOM작성 요령 등 컨설팅으로 원재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었다.



평택세관, 관세사 및 FTA-PASS 사후관리팀과 FTA활용 협조망을 구축하여 (주)00알루미늄사는 원산지 관리 업무량이 현저히 감소되었다.

FTA-PASS  
사후관리팀

(주)  
00알루미늄

평택세관  
관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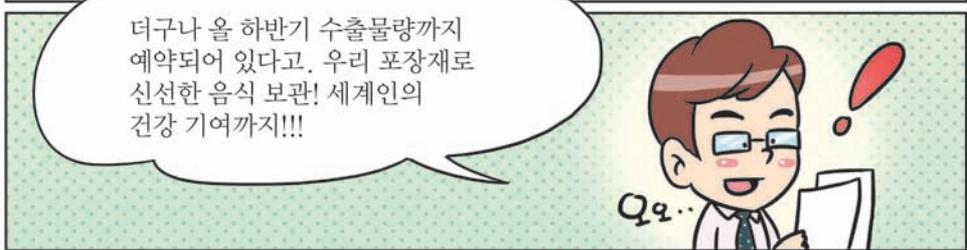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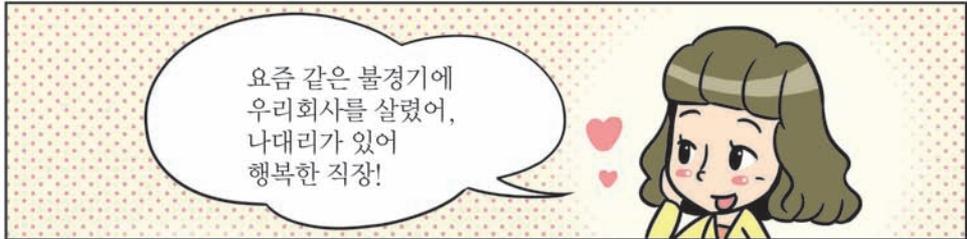


3개월후 2012년 6월말

2012.(주)00알루미늄

# 시상식







# FTAtoon

통합 매뉴얼



원산지 인증수출자  
완전정복기!!

#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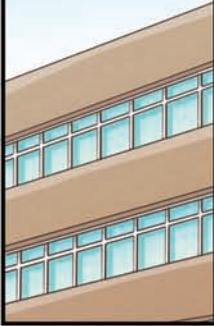




회사 회의실



세관설명회장



자율점검, 사후관리,  
갱신심사...??  
김과장님 말대로 여기  
오긴 왔는데 잘하는  
건지 모르겠다.



저, 혹시  
무한 상사에서 오신  
희숙 대리님?



@@ 알루미늄의 나활용입니다.  
무한상사 김과장님 후배구요.  
저도 원산지 전담 업무를  
맡고 있어요.



정말요?  
원산지  
전담자세요?

너무 반가워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하, 진짜 도움 주실분이  
들어오셨네요. 이제 집중해  
볼까요?



인증수출자제도설명회

안녕하세요~



**인증수출자제도**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를 의미하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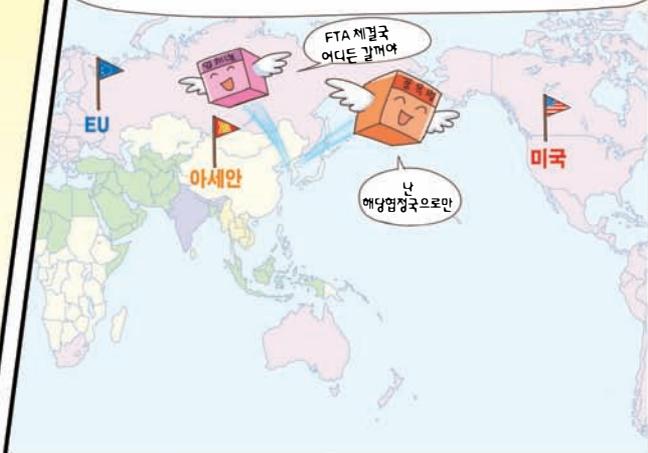
협정별	C/O 발급형태	혜 택
한-EU	자율발급제	6천유로초과 수출시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C/O자율발급 가능
한-EFTA	자율발급제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통상INVOICE)에 인증번호 기재시 수출자의 서명생략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기관발급제	C/O 발급신청시 첨부서류 제출생략
한-페루	기관발급/자율발급 혼용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C/O자율발급 가능



인증수출자는 업체별과 품목별로 나뉩니다.



많은 품목을 여러 협정국가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업체별인증을, 적은 품목을 특정국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인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제도 비교 ●●●

구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적용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인증심사기준	수출 또는 생산물품의 원산지관리능력	인증품목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운영, 서류보관의무	
인증유효기간	3년	2년 (법규준수도에 따라 차등적용 가능)
인증기관	5개 본부세관(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및 평택직할세관	
인증기준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인증수출자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관에 인증신청 시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서면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인증요건을 충족한 업체에 대해 인증을 부여합니다.

#### 인증수출자 지정 및 운영 절차



인증수출자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관에 인증신청시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서면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인증요건을 충족한 업체에 대해 인증을 부여합니다.

아울러, 특혜가 부여됨과 동시에 의무사항이 있는데요, **인증사항 변경신고, 원산지 자율관리(서류보관, 법규준수)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갱신심사를 신청**하시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 비교 ●●●**

구분	기관발급	자율발급
정의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관세당국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서명하여 사용하는 제도
대상 협정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한-페루	한-칠레, 한-EFTA, 한-EU, 한-페루, 한-미
특이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EFTA : 스위스산 치즈는 기관발급</li> <li>▶ 한-페루 : 발효 이후 5년간(2016. 7. 31까지) 기관발급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EU : 건당 수출금액이 6,000유로 초과시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 자율발급 가능</li> <li>▶ 한-페루 : 원산지인증수출자만 자율발급 가능</li> </ul>



수출금액 6천유로 초과시에는 인증수출자만이  
C/O 자율발급 가능 (상업서류 등에 작성)



업체 스스로 원산지 판단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 전담자, 주소 등 인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 받은 세관으로 즉시 신고



원산지를 판단하고 관리한다.. 전담자의 원산지  
및 FTA에 대한 전문지식은 필수겠네요..



혹시, 원산지  
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물론이죠!  
원산지 교육은 관세청  
포털사이트에서 온라인  
으로 수강하시거나  
관련 교육기관에서  
이수하시면 됩니다.

FTA 온라인 교육과정 수강 방법 ●●●		
구분	「자유무역협정사이버강의」 (관세청주관)	「e-원산지 아카데미」 (원산지정보원 주관)
사이트	<a href="http://customs.go.kr">http://customs.go.kr</a>	<a href="http://edu.origin.or.kr">http://edu.origin.or.kr</a>
비고	수료증 발급을 위한 회원가입 필요(무료)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다니  
바쁜 직장인에게는 안성맞춤  
이네요..



참, 갱신심사와  
자율점검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갱신심사'란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업체의 인증  
요건 유지여부를 세관당국이 재심사하고, 자율점검  
이란 업체 스스로 원산지관리 능력을 점검해보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율점검을 매년 철저히 이행한  
업체는 갱신심사도 어렵지 않겠요.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고, 원산지 관리에 문제가 있는 업체는 선별심사 대상으로 분류하여  
갱신심사도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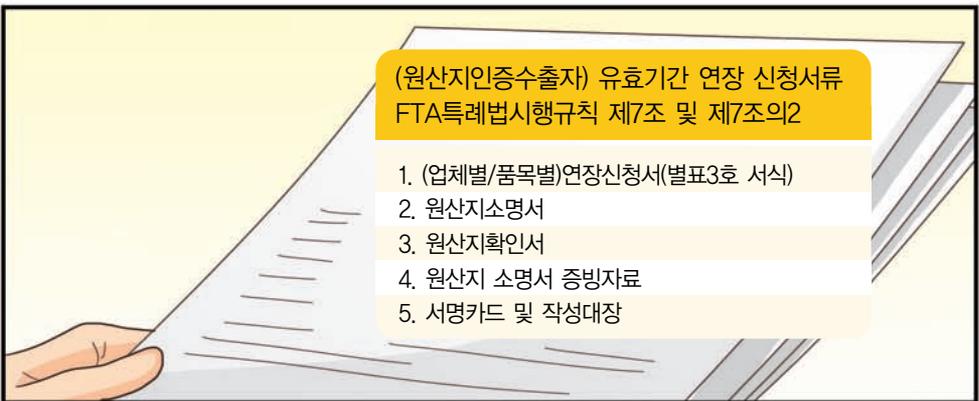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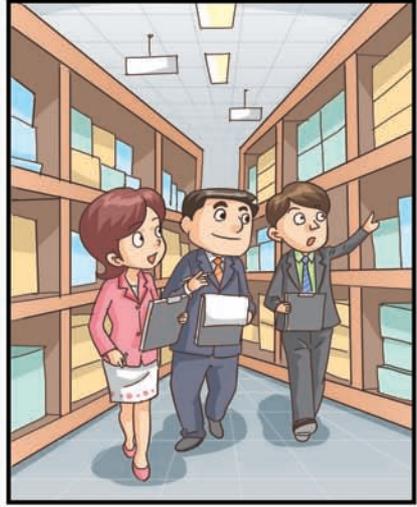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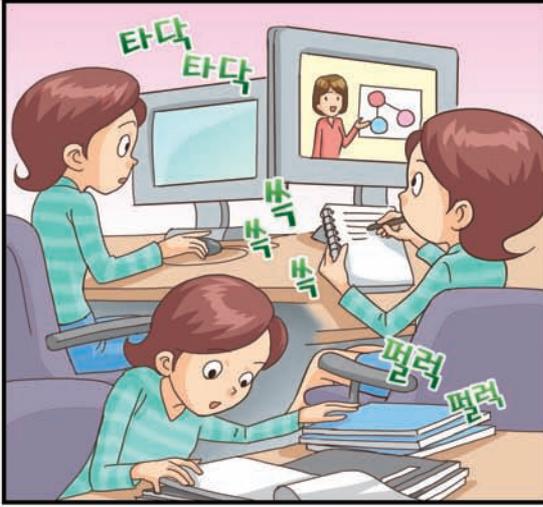


구분	사후관리	갱신심사
운영대상	인증일 기준 매 1년	인증 유효기간 만료 업체
운영방법	자율점검 · 선별심사로 이원화	서면심사 및 현지점검
제출서류	자율점검표	갱신신청서, 원산지소명서 등
점검사항	원산지 관리 및 인증요건 유지 여부	



다음 날





일주일 후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인증 받은 협정/품목번호에 대해서만 인증혜택 부여  
 인증을 받더라도 업체 책임 하에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판단  
 서류보관의무 및 사후검증에 대한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 인증품목 -> 증명서 발급 O



: 미인증품목 -> 증명서 발급 X

C/O를 발급은 추가인증을  
 받은 후에 가능해요.

큰 실수를 할  
 뻔했네.

짧은 시간 동안  
 업무를 제대로  
 숙지했는데..

호오

CEO 간담회

제가 비밀  
 병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희숙대리의  
 비밀병기라..

FTA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인증수출자의 진정한 의미는 인증취득이  
아닌 FTA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수출자이며,

인증수출자 원산지  
관리능력 향상

대외  
신뢰도 UP

수출증대  
일자리 창출

이를 위해 CEO 분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이 가장 중요  
합니다.



다음 날

올해 여러분들이 수고해주셔서 수출  
실적이 사상최대입니다. 특히  
고생많았던 희숙대리,  
정말 고마워요!



우리 회사에 복덩이가  
녕쿨째 들어왔어요.



원산지 전담자에게는  
상여금 및 승진기회를  
최우선으로 제공  
하겠습니다.

저작 저작

저작 저작

저작 저작

승  
진

FTA, 고마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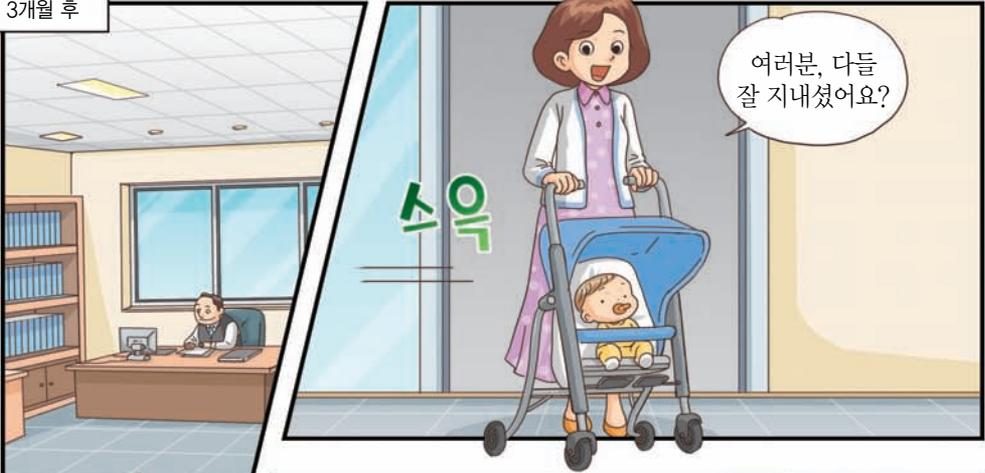




### 원산지 관리사 안내

- FTA 원산지에 대한 기업의 낮은 이해도와 실태를 감안, 관련 민간전문가 육성을 위해 원산지관리사 제도 도입('10.3.29)
  - ▶ 복잡·다양한 원산지규정의 정확한 이해를 통해 많은 기업이 FTA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교육 및 자격시험 시행
- 원산지정보원을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으로 지정('10.6.3)
- 원산지관리사 민간자격 국가공인 취득('12.12.27)
  - ▶ (교육·시험과목) FTA 협정 및 법령, 품목분류 실무, 수출입 통관실무, 원산지 결정기준
  - ▶ (합격 기준) ① 자격시험 시행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이수.  
② 자격시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3개월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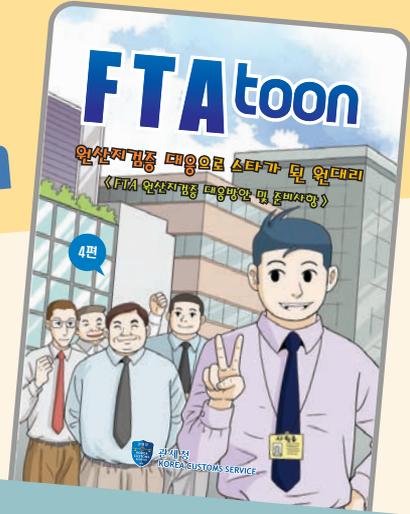


**FTA toon**  
통합 매뉴얼



# FTAtoon

통합 매뉴얼



원산지검증 대응으로  
스타가 된 원대리

#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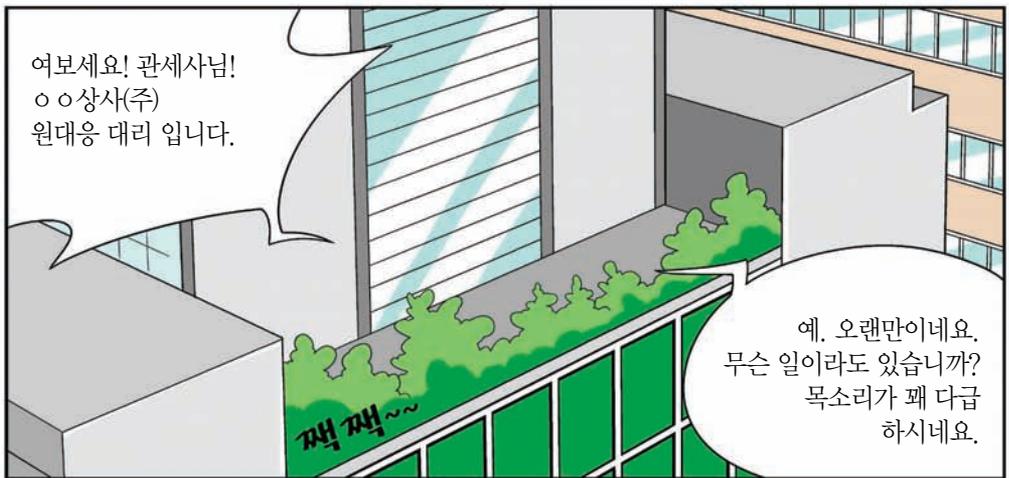








다음날 아침







검증요청 후 2일째



팀장님!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저도 실제로 검증을 받는  
것은 처음이라 당황스럽긴  
합니다.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관세사와 상담도  
해서 방법을 찾아  
봤습니다.

뜸들이지 말고,  
결론을 얘기해.  
나 성질 급한거  
잘 알잖아?



이번 검증은 운송,  
계약, 제조공정에 대해  
상세히 파악해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결론을 구해야  
됩니다.

운송관계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이지만,  
계약이나 제조  
공정은 자신  
없는데...



그렇긴 한데요,  
검증이라는 게  
회사 전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음.. 그렇근  
계속 설명  
해 봐.

예!

우선 운송요건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 확인

- ▶▶ 수출시 발급한 B/L과 운송경로를 설명하는 지도를 통해 확인
  - ▶▶ 수하인(최종도착지)은 독일 뒤셀도르프에 있고,
  - ▶▶ 중간 경유지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일 때,
  - ▶▶ 수출운송 B/L 등을 토대로 한국→네덜란드→독일까지의 운송 경로 확인 해 주고,
  - ▶▶ 운송경로를 설명하는 지도와 상세운송경로를 설명
- ⇒ 직접운송원칙 충족





저도 이제서야 알았는데, 검증은 해외 영업팀 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원대리, 이제 두 분께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려 드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 건지 좀 자세히 말해 주세요.



알았어요. 그 서류는 수출계약 건별로 잘 정리해 뒀으니, 금방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예. 본 검증요청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상대국 검증요청 내용

1. 물품의 운송경로
2. 거래당사자 요건
3. 제조, 가공 공정의 적정성
4.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5.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과 증빙서류의 보관 관리

신부장님께서서는 기본서류와 계약관련 서류를 챙겨 주세요.



### 관리, 계약부서 준비서류

- 회사 소개서
- 수출계약서
- 원재료 구매계약서
- 원재료 세금계산서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김부장님께서서는 제조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 생산부서 준비서류

- 주문서
- 생산의뢰서
- 제조공정도
- 제조공정명세서
- 제조설비현황
- 카탈로그
- BOM(원재료명세서)
- 제조공정별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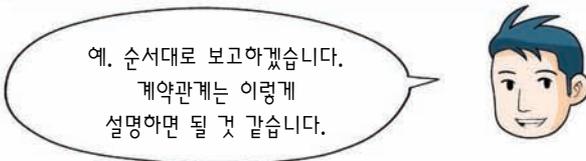
그리고 우리 해외영업팀에서는  
수출입과 원산지증명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 수출, 영업부서 준비서류

- 제품 수출신고필증
- 원재료 수입신고필증
- B/L 등 운송서류
- 수출입물품 Invoice
- 인증수출자 인증서
- 서명카드
- 원산지신고서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포괄확인서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 수출계약관련 설명 방법

- ▶ 한-EU FTA 체약국인 독일D사 주문에 따라 제작, 수출 하였음을 확인
- ▶ 증빙서류 : 수출신고서, B/L, Invoice, 수출거래계약서

수출할 때, 직접운송원칙을 준수하였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음...



### 운송관련 설명 방법

- ▶ '12.0.0 세관에 수출신고하여 당일 신고수리
- ▶ '12.0.0 부산항에서 선사로부터 B/L을 발급받아 선적
- ▶ 네덜란드 로테르담으로 선박운송된 후 독일 뒤셀도르프D사로 육로운송
- ▶ 네덜란드-독일 국경 통과시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않고 다른 가공 없이 운송되었음을 증명
- ▶ 증빙서류는 수출신고서, B/L, Invoice와 육로운송 구간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 및 육로운송관련 서류 등



다음은 제조공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 제조관련 설명 방법

- ▶ 한-EU FTA 의정서 제6조의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에 해당되는지와 한국에서 실제 생산되었는지 여부가 쟁점
- ▶ 수출물품이 우리회사 공장의 설비로 주문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
- ▶ 세관의 현지방문조사시 제조공정, 생산설비 공개
- ▶ 증빙서류는 회사소개서, 주문서, 생산의뢰서, 제조공정도, BOM, 장비현황, 카탈로그, 생산공정별 촬영사진 등

그 다음은? 원산지 결정 기준이겠나?



예.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는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설명 방법

- ▶ 본 사례에서 수출물품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은 제품과 원재료가 관세율표(HS) 4단위 이상이 변경되어야 하는 세번변경기준(CTH)
- ▶ ○○상사(주)는 세번변경기준(CTH)으로 원산지신고서를 자율발급함
- ▶ 핵심부품, 원재료는 국내에서 납품받고, 일부부품과 원재료는 수입
- ▶ 완제품은 불펜 세번인 HS 9608호에 분류되고,
- ▶ 원재료는 플라스틱사출성형(HS 3907), 스프링(HS 7320), 잉크(HS 3212)등으로 분류
- ▶ 증빙서류는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재료명세서(BOM), 제조공정도 등



원산지증빙서류의 유효성은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원산지증빙서류의 유효성 설명 방법

- ▶ ○○상사(주)는 세관으로부터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음
- ▶ 해당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한 후 원산지전담자가 서명한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유효하다는 것을 세관에 설명
- ▶ 증빙서류는 인증서, 서명카드, 원산지신고서, Invoice 등



이것은 수출입과 원산지증명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세관에서 요구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 기록보관(Record Keeping) 상태 설명 방법

- ▶ 한-EU FTA 23조 1항, 16조 3항과 FTA관세특례법 제12조 1항, 제13조 1항 2호에서 규정한 수출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를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
- ▶ 증빙서류는 수출거래계약서, 수출신고필증, 원재료 수입신고필증, 원재료 구매계약서, 원재료 세금계산서, 원재료명세서(BOM), 제조공정도, 제조공정명세서, 원산지신고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증명서류 관리대장, 서명카드, Invoice 등의 서류의 보관 및 검증 시 제출



FTA 검증을 겪어보니 체계적으로  
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부장 생각은 어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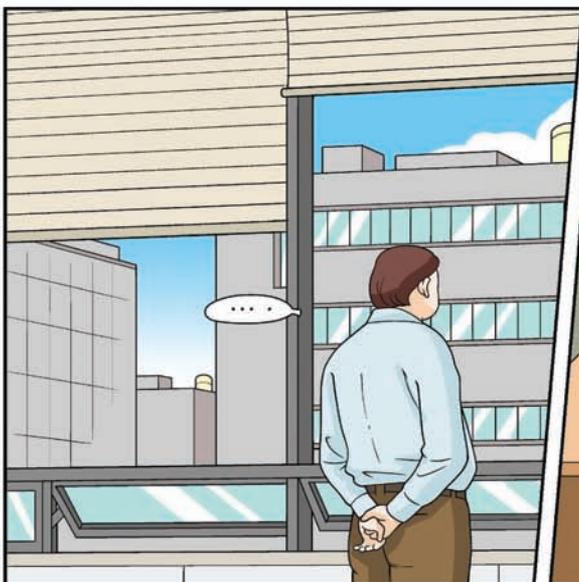


예. 회사 전반적인 문제로 생각됩니다.  
이번 검증을 계기로 전 부서가 협력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 많았어요.  
그만 나가들 보세요.

예. 사장님.  
저희들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따르릉~







# FTAtoon

통합 매뉴얼



원산지검증 대응으로  
스타가 된 박과장

05



미국에서 원산지 검증?



미국에서 직접 우리 회사를  
검증한다는거야?

통관대행하는 OO관세사에  
확인해보니 한-미 FTA는  
직접검증방식이라 미국세관에서  
직접검증을 합니다.



검증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어보니  
OO관세사도 잘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먼저 사장님께 보고할테니  
검증대응방안을 빨리 알아보게.

## 한-미 FTA 원산지 검증방식

### 직접검증

섬유는 계약상대국 수출자 등 검증할 경우 간접검증 또는 공동현지검증 가능

## 미국세관 원산지 검증원칙

- 수입자 우선 검증원칙
- 수입신고 수리 후 검증원칙
- 서면 우선 검증원칙  
(서면검증으로 원산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 현지검증 수행)

사장님, 미국세관이  
우리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검증한다는 메일을  
미국 수입자로부터 받았습니니다.

(주)○○기업 사장실

요구서류도 많고  
기한을 확인해보니  
25일도 남지 않아서  
시간이 상당히 촉박할 것  
같습니다.

검증대응방안은 있는가?

(주)○○기업  
사장 장한이

원산지검증은 처음이라  
잘 아는 직원도 없습니다.

통관대행하는 OO관세사도  
잘 모르는 것 같고 FTA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받아야할 것 같습니다..

.....

FTA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받고  
검증대응방안 마련하는 것이  
훨씬 일이 수월할거야.

지난번 내가 아는 업체도  
그렇게 해서 일이 잘 처리됐다고  
하더군요. 나도 알아볼테니 김차장도  
대응방안을 알아보게.



원산지검증 대응관련 회의



<p>박식한 관세사 FTA 컨설턴트</p>			<p>김영업 차장 (주)00기업 해외영업팀 차장</p>
<p>박수출 과장 (주)00기업 해외영업팀 소속 과장 원산지관리사</p>			<p>임제조 부장 (주)00기업 생산팀 부장</p>
<p>장구매 과장 (주)00기업 구매팀 과장</p>			<p>정회계 차장 (주)00기업 회계팀 차장</p>





## 정보제공 요청서 (Request for Information; CBP FORM 28)

- 미국CBP(Customs & Border Protection)에서 원산지검증을 위해 수입자 등에게 요청할 자료가 있을 경우 정보제공 요청서(Request For Information)를 보냄.
- 대개의 경우 CBP Form 28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CBP 담당자와 서류제출 기한 연장 협의가능



# CBP Form 28



CBP Form 28  
통지문서입니다.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MB No. 1651-0023 Exp. 03-31-2014	
REQUEST FOR INFORMATION 19 CFR 151.11			
<b>Any text that scrolls will not print</b>			
3. Manufacturer/Seller/Shipper	4. Carrier	1. Date of Request	
5a. Invoice Description of Merchandise		5b. Invoice No.	2. Date of Entry and Importation
7. Country of Origin/Exportation		6. HTSUS Item No.	
9. TO:		8. CBP Broker and Reference or File No.	
10. FROM:			
Production of Documents and/or Information Required by Law: If you have provided the information requested on this form to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t other ports, please indicate the port of entry to which it was supplied, and furnish a copy of your reply to this office, if possible.		11a. Port	11b. Date Information Furnished
General Information and Instructions on Reverse			
12. Please Answer Indicated Question(s)		13. Please Furnish Indicated Item(s)	
<input type="checkbox"/> A.	Are you related (see reverse) in any way to the seller of this merchandise? If you are related, please describe the relationship, and explain how this relationship affects the price paid or payable for the merchandise.	<input type="checkbox"/> A.	Copy of contract (or purchase order and seller's confirmation thereof) covering this transaction, and any revisions thereto.
<input type="checkbox"/> B.	Identify and give details of any additional costs/expenses incurred in this transaction, such as: <input type="checkbox"/> (1) packing <input type="checkbox"/> (2) commissions <input type="checkbox"/> (3) proceeds that accrue to the seller <input type="checkbox"/> (4) assists <input type="checkbox"/> (5) royalties and/or license fees	<input type="checkbox"/> B.	Descriptive or illustrative literature or information explaining what the merchandise is, where and how it is used, and exactly how it operates.
		<input type="checkbox"/> C.	Breakdown of components, materials, or ingredients by weight and the actual cost of the components at the time of assembly into the finished article.
		<input type="checkbox"/> D.	Submit samples. Article number and description _____ from container _____ mark(s) and number _____ Samples consumed in analysis, and other samples whose return is not specifically requested, will not normally be returned.
		<input type="checkbox"/> E.	See item 14 below
14. CBP Officer Message			
15. Reply Message (Use additional sheets if more space is needed.)			
16. CERTIFICATION It is required that an appropriate corporate/company official execute this certificate and/or endorse all correspondence in response to the information requested. (NOTE: NOT REQUIRED IF FOREIGN FIRM COMPLETES THIS FORM)			
I hereby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furnished herewith or upon this form in response to this inquiry is true and correct, and that any samples provided were taken from the shipment covered by this entry.		16a. Name and Title/Position of Signer (Owner, Importer, or Corporate/Company Official)	16b. Signature
		16c. Telephone No.	16d. Date
17. CBP Officer	18. Team Designation	19. Telephone No.	

CBP Form 28 (03/11)



## 섬유류 미국세관 요청서류 Sample 목록



1.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설명자료
2. 구매주문서, 대금지급명세서, 원산지증명서
3. 제조관련 서류 : 기계의 타입과 수량, 직원수가 포함된 제조자 공장 프로필, 제조자 생산 요약서(재단, 봉제, 포장 등 생산일자 및 일간 생산수량 기재), 재단 및 봉제 관련 상세 기록 필수적으로 제공
4. 직물 관련 서류 : 구매주문서, 송장, 대금지급명세서, 선하증권 또는 기타운송서류, 한국수입신고필증(가능한 경우), 직물 납품서
5. 원사 관련 서류 : 구매주문서, 송장, 대금지급명세서, 선하증권 또는 기타 운송서류, 한국수입신고필증(가능한 경우), 원사 납품서
6. 원가명세서 : 직물, 부속품, 재단, 봉제 원가내역(각 공정이 수행된 국가 표시)
7. 한국-미국간 운송 증빙자료인 MASTER B/L

HS 6205.30의 원산지결정기준은  
CC(류 변경기준) + 재단·봉제 역내  
가공규정인데

직물구매해서 재단·봉제까지 저희 공장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원산지결정기준은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 HS 6205.3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CC  
(류 변경기준)  
+  
재단·봉제 역내가공

다만 다음 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제5106호~제5113호, 제5204호~제5212호, 제5307호~제5308호  
제5310호~제5311호, 제5401호~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제5403.39호, 제5403.42호~제5408호  
제5508호~제5509호, 제5511호~제5516호, 제5801호~제5802호  
제6001호~제6006호

원산지결정기준 예외규정에  
일부 원사는 원산지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산지  
Country of Origin

생산에 투입되는 원사의 종류와  
원산지는 어떻게 되나요?

폴리에스터사 80%와  
면사 20%가 들어가는데  
원산지 모두 국내산입니다.

국내산



made in Korea

알겠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에는  
문제없는 것 같네요.

그럼 관건은 미국 세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원사 및  
직물 생산업체로부터  
확보하는 겁니다.

원재료 공급업체가 적합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다른 서류를 아무리  
잘 제출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 제출서류 유형



유형	내용	비고
거래증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재료 거래명세서 ( Invoice, Transport Documents )</li> <li>거래 및 대금결제 서류 ( Invoice, Packing List, B/L, Payment Records )</li> </ul>	거래의 실질 증빙
원산지증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재료 원산지 확인서 ( Manufacture's Affidavit ) 또는 국내제조확인서, 원산지 증명서</li> </ul>	원재료 원산지의 공급자 증빙
생산증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조공정도, 원재료명세서 ( BOM )</li> <li>공장 및 제조설비목록 ( Factory Profile ), 생산능력 ( Production Capacity ), 종업원 수 및 임금지급내역, 재단/봉제지시서 ( Cutting &amp; Sewing Record )</li> </ul>	실질생산 증빙
회계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재료별 단가 ( Price ), 제품원가명세서</li> </ul>	



유의 해 주세요.

## 주요 유의사항



### 1. 업무단계의 순차성

( 업무순서도를 작성하여 생산순서의 순차성 및 상호관련성 유지 )

### 2. 품명 · 규격의 일치성

( 섬유, 사, 직물의 품명 · 규격이 서류 간 상호 일치 )

### 3. 생산수량의 적합성

( 원재료 구매량과 수출량 비교하여 합리적이고, 일별 생산능력 초과하면 안됨 )



며칠 뒤...

그제 말씀드렸던  
원산지검증 제출서류는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까?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제출기한이 촉박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직물공급업체  
제직물 차장

담당직원이  
갑자기 퇴사해서  
업무인수인제도  
쉽지 않구요.

모두들 원산지관리업무를  
기피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사 공급업체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영문으로 작성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에혀...

.....

제출기한 연장이 가능한지  
아아볼테니 준비 좀 잘 해주십시오.

칭찬  
하셔요

원산지검증 잘못되면  
수출물량에 타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00기업  
원산지관련 담당자들 회의중

부장님,  
생산증빙자료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장님께 내일까지  
경과보고를 해야되는데요.



생산일지와 작업일지는  
기존부터 해오던게 있어서  
마무리됐고

일별 및 월별 생산능력까지  
파악해서 작성했네.

그리고  
설비현황과 직원현황은  
공장프로파일 내용에 보면  
다 나와있네.



꼼꼼하게 잘 작성하셨네요.  
생산공정을 볼 수 있는  
제조공정도도 있습니까?

원사부터 직물 생산, 염색 및  
재단·봉제·마무리공정까지  
모두 순차적으로 알기쉽게  
작성했으니 문제 없을거야.





감사합니다. 구매팀에서는  
원재료 공급업체 제출자료가  
확보됐습니까?



자료는 거의 확보됐는데  
영문번역이 안되어 있습니다.  
영문작성까지는 힘들어하더라고요.

구매팀에서  
직접 해서 내일 중으로  
전달하겠습니다.



회계팀에서는  
제조원가명세서가  
준비되었나요?

제조원가명세서는 벌써 다 작성이  
됐는데, 문제는 이 자료를  
미국 수입자에게 꼭 줘야하는지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가깝아줘...  
가깝아줘...  
연만지  
알어



이걸 보면 나중에  
단가 인하해 달라고  
달려들텐데요...



저도 그게 맘에 걸리는데요,  
제조원가명세서를 꼭 제출해야 하는지  
관세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다음날

미국세관에서  
요청한 모든 자료가  
준비되었습니다.

메일로 미리  
보내드렸는데  
확인해보셨습니까?

네. 검토해보니 이상없이  
잘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고생하신 흔적이 여기저기  
보이네요.

Good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제조원가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할까요?

수입자에게 보낸다면  
다음번 계약시 단가인하  
요구가 분명히 있을텐데요.

그 점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췌!

원가자료

왜냐하면 원가자료 등  
민감한 부분은 미국세관에  
직접 보내는 것이 가능하고

비밀도 보장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료제출 후 열흘이 지난 어느날...

관세사님!  
이게 어떻게 된거죠?

메일 보내드렸으니  
바로 확인 좀 해주세요!



미국세관에서  
CBP FORM 29라고 써어있는  
'Notice of Action'이라는 걸  
수입자를 통해 보내왔는데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특혜관세가 배제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 이행통지서

(Notice of Action : CBP FORM 29)

미국CBP(Customs & Border Protection)가 정보제공요청서를 통하여 수입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는 양식임.

통보내용은 예비결정 과 최종결정으로 나뉘는데 추가소명자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예비결정(Proposed Action)하면서 1회 20일 이내의 추가 소명기간을 부여함. 최종결정(Taken Action)은 원산지 충족 또는 미충족에 따른 결과를 통보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추후 이의제기절차를 거쳐야 함.

## [CBP Form 29]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NOTICE OF ACTION <small>This is NOT a Notice of Liquidation</small>		DATE OF THIS NOTICE
ENTRY NO.	DATE OF IMPORTATION	ENTRY ID NUMBER	ENTRY TYPE	ENTRY NO.
ENTRY NUMBER	ENTRY NO.	ENTRY NUMBER	ENTRY NO.	ENTRY NO.
ENTRY NUMBER		ENTRY NUMBER		ENTRY NUMBER
ENTRY NUMBER		ENTRY NUMBER		ENTRY NUMBER
IS THE FOLLOWING ACTION, WHICH WILL RESULT IN AN INCREASE IN DUTY, —				
<input type="checkbox"/> IS PROPOSED IF YOU DISAGREE WITH THIS PROPOSED ACTION, PLEASE FURNISH YOUR REASONS IN WRITING TO THIS OFFICE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OF THIS NOTICE. AFTER 20 DAYS THE ENTRY WILL BE LIQUIDATED AS PROPOSED.				
<input type="checkbox"/> HAS BEEN TAKEN THE ENTRY IS IN THE LIQUIDATION PROCESS AND IS NOT AVAILABLE FOR REVIEW IN THIS OFFICE.				
TYPE OF ACTION				
A. <input type="checkbox"/> RATE ADVANCE B. <input type="checkbox"/> VALUE ADVANCE C. <input type="checkbox"/> EXCESS <input type="checkbox"/> WEIGHT <input type="checkbox"/> QUANTITY D. <input type="checkbox"/> OTHER (See below)				
(For electronic filing in Active Entry liquidation cases)				
ENTRY NUMBER		ENTRY NUMBER		ENTRY NUMBER
ENTRY NUMBER		ENTRY NUMBER		ENTRY NUMBER

CBP FORM 29

그렇리가요!  
요구자료를 모두  
제출했을텐데...

잠시만...

아...이거군요.  
원사 생산업체의  
원산지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폴리에스터 원사업체  
원산지확인서는 제출됐는데,  
면사업체 원산지확인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원산지증빙자료로  
원산지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확인서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제조자진술서로  
원재료의 원산지를  
증빙합니다.

그런데  
공문에 나와있는 제조자진술서  
(Manufacturer's Affidavit)가  
뭔가요?

우리나라의 원산지확인서와 국내제조확인서를  
합쳐놓은 성격으로 미국 수입자 또는 세관 측에서  
원산지확인서 대신 M/A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작성하면 되죠?

?

형식은 별도로 없고  
제조자가 직접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켜 작성하면 됩니다.

## Manufacture's Affidavit(제조자 진술서)에 기재될 정보

- 생산설비가 위치한 주소와 생산자 이름(Full name and Address)
- 생산설비가 위치한 소재지에서 근무하는 자의 작성자명 · 연락처 및 수기 서명
- 섬유함량(Fiber content), 원사규격(Yarn count), 송장 또는 주문번호, 의류의 스타일 번호(Style number) 등
- 거래관련 정보(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판매하였는지 등)

추가자료 제출 후 15일이 지난 어느날...

수입자로부터 원산지 검증결과  
원산지를 충족한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회신받는다.  
그리고 메일내용에는  
원산지검증에 성실히 임해준  
(주)OO기업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미국 원산지검증 대응을 하면서 느낀건 FTA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박식한 관세사가 계신 OO관세법인에는 수출입통관뿐만이 아니라 심사, FTA 등 전문가가 많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OO관세법인하고 수출입통관대행 및 관세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 FTAt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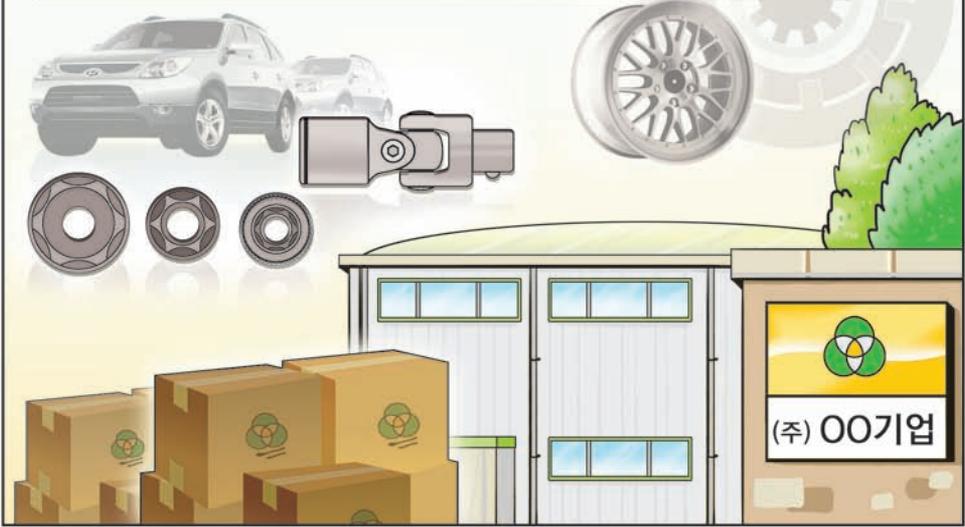
통합 매뉴얼



## FTA의 여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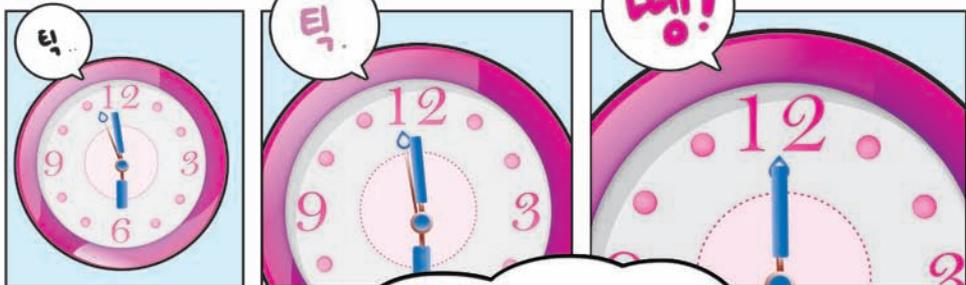
# 06

(주)OO기업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자동차 부품 수출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이며 현재 유럽과 미주지역으로 수출시장을 확장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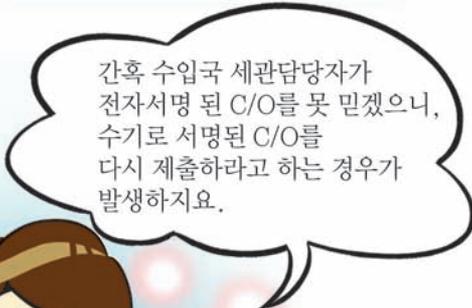






· <C/O 발급방식 비교> ·

	아세안 국가	우리나라
신청	발급기관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서명/인장	서명권자 수기 서명 및 인장날인	전자적 서명 및 인장날인
발급	직접 서류 발급	온라인 발급, 신청자 직접 출력





## 한국의 전자 C/O 발급 시스템(e-C/O)에 대한 논의

- ('08.1월) 제6차 관세원산지위원회에서 논의시작
- ('08.4월) 제7차 관세원산지위원회에서 베트남,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아세안국가 동 시스템 인정
- ('08.7월) 제8차 관세원산지위원회에서 모든 아세안 국가가 동 시스템 인정 확인
- ('13.6월) 한국관세청과 인도네시아 관세청간 e-C/O 불인정 문제 개별협의 완료
- ('13.6월) 제17차 관세원산지위원회에서 모든 아세안국가 e-C/O 인정 재확인

## 한-아세안 FTA 제8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FINAL




**THE 8<sup>th</sup> MEETING OF THE ASEAN-KOREA SUB-COMMITTEE  
ON TARIFFS AND RULES OF ORIGIN (AK-STROO)**

13-15 July 2008, Bangkok, Thailand

**Summary of Decisions**

**INTRODUCTION**

1. The 8<sup>th</sup> Meeting of the ASEAN-Korea Sub-Committee on Tariffs and Rules of Origin (AK-STROO) was held on 13-15 July 2008 in Bangkok, Thailand.

(중략)

**AGENDA ITEM 5: RULES OF ORIGIN**

**5.2 Electronically-Signed and Stamped CO Issuance System**

19. Malaysia and Viet Nam confirmed their acceptance on the electronically-signed and stamped CO system of Korea. Having this confirmation, all ASEAN Member States have confirmed their acceptance of this system.

(하략)



한국의 전자 C/O 발급시스템에 대해 모든 아세안국가는 08년에 이미 인정하기로 합의한바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 수입자를 통해 알려줘야겠습니다.



## C/O 진위여부 확인 방법

### 세관발행 C/O

관세청 영문 홈페이지 접속  
(<http://english.customs.go.kr>)

▼  
Information Plaza

▼  
Certificate of Origin에서 조회



### 대한상의 발행 C/O

대한상의 영문 홈페이지 접속  
(<http://cert.korcham.net/english>)

▼  
Reference System에서 조회



ID : C/O 우측 상단 Reference No / PW : Reference Code 입력







HS6단위는 전세계  
공통 아닌가요?



배우리씨 말처럼  
HS Code 앞 6자리는  
국제적으로 같아야  
하는게 맞지만,

실제로는 국가마다  
동일품목에 대해  
서로 다른 품목분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냥 C/O에 있는대로  
해주면 되죠?  
인도네시아 세관직원은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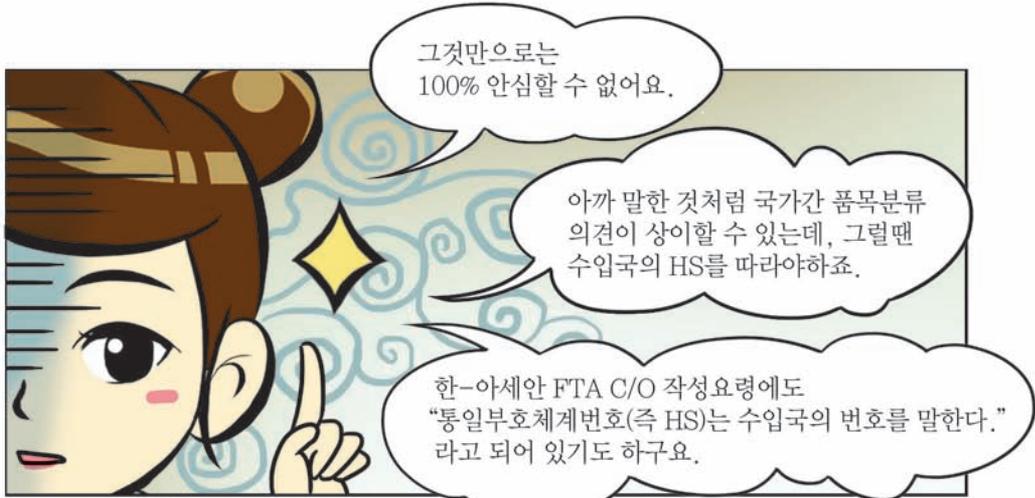


관세혜택은 수입국이 자국에서  
적용하는 있는 HS Code별로  
원산지기준을 확인하고  
협정세율을 적용하게 되죠.

따라서 HS Code에 오류가 있으면  
원산지판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원산지 증명서의 효력이 부인될 수도  
있겠죠.







그것만으로는  
100% 안심할 수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국가간 품목분류  
의견이 상이할 수 있는데, 그럴땐  
수입국의 HS를 따라야하죠.

한-아세안 FTA C/O 작성요령에도  
“통일부호체계번호(즉 HS)는 수입국의 번호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기도 하구요.



그런데 우리가 수입국의  
품목번호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거나,  
기존의 품목분류 결정사례를  
참고 하는것이 좋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한-아세안 FTA협정에서  
사전심사제도가 없는데요?



협정에 없다고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은 아니예요.

각 나라마다 제도가 다르니  
수입자에게 확인해 보는게  
좋겠어요.



## 사전심사제도(Advance Rulings)

상품의 품목분류, 원산지결정 등에 관한 유권해석으로 법률적 효력이 부여됨.

### 협정별 근거조문

한-칠레(제5.9조), 한-싱가포르(제5.8조), 한-인도(제5.8조), 한-EU(제6.6조), 한-페루(제5.7조) 한-미국(제7.10조), 한-터키(제3.8조), 한-콜롬비아(제4.9조)













## 한- 아세안 FTA 활용 TIPS

### 1. HS Code를 확인하라.

우리나라와 수입국의 HS Code가 다르다면 수입국 HS Code로 C/O를 작성하라.

수입국 HS Co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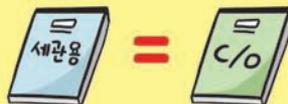
### 2. C/O 뒷면의 작성요령대로 정확히 작성하라.

특히 원산지결정기준, 제3국송장 관련 정보, 제조자 정보 작성에 주의하라.

수출품 규격이 다수인 경우, 규격별로 순번(Item)을 생성하고 각각 HS번호 및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작성하라.



### 3. Invoice(송장) 등 수입시 관세당국에 제출할 상업서류와 C/O의 기재 내용을 일치시켜라.



### 4. C/O 출력시 칼라 프린트로 인쇄하고, 앞면과 뒷면 (overleaf notes) 양면으로 인쇄하라.



### 5.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물품은 선적 직후 또는 선적후 3일 이내 C/O를 발급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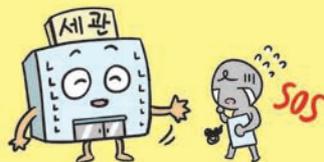
(선적전에 발급된 C/O에 대해서는 '14.1.1부터 인정 가능)



### 6. '수출자신고란(11번 항목)'에는 장소, 일자, 서명권자의 서명을 친필로 기재하되, 서명일자는 C/O의 발행일자와 일치시켜라.



### 7. FTA 활용 애로가 있을 때는 즉시 세관 등 전문기관에 도움을 청하라.



감사합니다! 나 선배님,  
선배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선배님. 앞으로도  
많이 알려주세요~

역시 나잘란씨 대단해요.  
우리회사가 유럽과 미국지역으로  
수출시장 확장을 위해 원산지 전담자를  
팀장급으로 공모중인데,  
내가 추천서 써줄게요.

이썬썬  
이썬썬

우  
우  
우...

그렇다고 추천서만 써주시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성과금을  
때우려는건 아니시죠?



당연하죠! 난 꼭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니까요.  
...하하하  
그런데 나잘란씨...  
궁금한게 하나 더...

겨.. 저기요..



탁..



탁.



탁!~



퇴근시간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 FTA 활용애로 신고방법

- ① 관세청 FTA포털(fta.customs.go.kr) 접속
- ② 「FTA 원스탑 지원센터」 클릭 > 「FTA애로사항 신고하기」 클릭
- ③ 「FTA애로사항 신고서」 작성 후 「보내기」 클릭
- ④ 필요시 신고세관 담당자에게 유선연락, FTA 활용애로에 대해 상담



## 본부세관별 FTA 활용애로 담당자 연락처

**FTA 원스탑 지원센터**  
 전국 6개 본부세관에 설치된 「FTA 원스탑 지원센터」에서는 FTA 활용 애로사항 상담에서 맞춤형 민생형 세공, 사무관리까지 필요한 모든 지원을 원스탑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관명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	E-mail
서울본부세관	김효경	02-510-1570	02-2015-7971	fta-seoul@customs.go.kr
인천본부세관	홍성우	032-452-3172	032-891-9186	fta020@customs.go.kr
부산본부세관	이억동	051-620-6637	051-620-1140	fta030@customs.go.kr
대구본부세관	김영호	053-230-5292	053-230-5626	fta120@customs.go.kr
광주본부세관	김수미	062-975-6053	062-975-8049	fta071@customs.go.kr
광덕직할세관	최종남	031-8054-7043	031-8054-7046	fta015@customs.go.kr

▶ FTA 애로사항 신고하기



## FTA toon 통합 매뉴얼

발행일	2013년 11월
발행처	관세청 FTA 집행기획관실
편집	박병진 FTA 집행기획관, 안병욱 FTA 집행기획담당관
시나리오	FTA 집행기획관실
만화	오혜령, 이향숙, 정지은, 원유수
인쇄처	디자인아람

# FTAtoon

통합 매뉴얼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